

의 안 번 호	제 호	의 결 사 항
의 결 연 월 일	2020. . . (제 회)	

초 · 중 등 교 육 법 시 행 령
일 부 개 정 령 안

제 출 자	국무위원 ○○○ (교육부장관)
제출 연월일	2020. . .

법 제 처 심 사 전

1. 의결주문

초·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

공모교장 자격연수 실시 및 운영과 관련하여, 자격연수 관련 사항을 망라하여 규정하고 있는 「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」 제6조제3항을 준용하도록 하여 일반교장-공모교장 자격연수 실시 및 운영의 일관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임

3. 주요내용

- 가. 공모교장 자격연수의 구체적인 내용, 실시방법을 정하도록 한 후단 규정 삭제(안 제105조의2제2항)
- 나. 공모교장 자격연수 운영과 관련된 사항은 「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」 제6조제3항을 준용하도록 하는 조항 신설(안 제105조의2제3항)

4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5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생 략
- 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- 다. 합 의 :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와 합의되었음
- 라. 기 타 :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대통령령 제 호

초·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초·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05조의2제2항 후단을 삭제하고,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③ 제2항에 따른 공모교장의 자격연수에 관하여는 「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」 제6조제3항을 준용한다. 이 경우 “교장과정”은 “공모교장과정”으로 본다.

부 칙

이 영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105조의2(공모 교장의 자격 등)	제105조의2(공모 교장의 자격 등)
① (생략)	① (현행과 같음)
②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「교육공무원법」 제29조의3에 따라 공모 교장으로 임용된 사람 및 제1항에 따라 사립 자율학교와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의 공모 교장으로 임용된 사람 중 교장자격증 미소지자에 대해서 임용 후 1년 이내에 자격연수를 실시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자격 연수의 구체적인 내용, 실시방법 등은 교육부장관이 정한다.	②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. <후단 삭제>
<신설>	③ 제2항에 따른 공모교장의 자격연수에 관하여는 「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」 제6조제3항을 준용한다. 이 경우 “교장과정”은 “공모 교장과정”으로 본다.

< 의안 소관 부서명 >

교육부 교원양성연수과	
연 락 처	(044) 203 - 6478